

#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절차 안내

국민권익위원회  
국제인권센터

# ◆ 인권침해, 스포츠비리의 정의

## 1. 체육계 인권침해/스포츠 비리 신고는

체육계 인권침해/스포츠 비리 신고는

**안전하고 깨끗한 스포츠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.**



누구든지 안심하고 체육계 인권침해/스포츠 비리 상담·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상담·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### I ‘체육계 인권침해’란?

“체육계 인권침해”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폭력, 성폭력을 포함한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상의 체육활동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.

### I ‘스포츠 비리’란?

"스포츠 비리"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

- 1)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, 배임, 횡령 및 뇌물수수, 입시비리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와
- 2)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,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.

# ◆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?

- ‘스포츠윤리센터’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  
- 스포츠윤리센터는  
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 
설립된 법인입니다.(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)

# ◆ 어떻게 신고해요?(온라인)

- ‘스포츠윤리센터’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 
<https://www.k-sec.or.kr/front/counsel/online02.do>

## 1 온라인 상담 · 신고

### 상담

- 피해자 또는 제3자는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,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상담신청 시 법률·의료·심리적 구제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, 심리상담만 원하시는 때에는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### 신고

- 피해자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, 신고함으로써 조사가 진행됩니다.

[온라인 상담 · 신고하기 >](#)

이메일 상담 · 신고하기 >  
with@k-sec.or.kr

# ◆ 온라인 상담 및 신고 시 절차

## | 온라인 상담 및 신고 처리절차

01 상담 및 신고 > 02 개인정보 이용동의 > 03 본인인증 > 04 상담 및 신고접수 > 05 접수완료 >  
06 담당자 확인 및 답변완료

## | 온라인 상담 및 신고접수 확인 방법

01 상담 · 신고접수 조회 > 02 본인인증 > 03 상담 및 신고접수 확인

- ‘스포츠윤리센터’ 신고접수 확인 가능한 주소  
<https://www.k-sec.or.kr/front/counsel/counselList.do>

## ◆ 어떻게 신고해요?(전화)

- ‘스포츠윤리센터’ 상담원에게 가능합니다.

2

전화상담 · 신고

상담전화 1670-2876 / 02-6220-1376

평일 오전 09:00 ~ 오후 09:00

(점심시간 오전 12:00 ~ 오후 01:00 / 저녁시간 오후 06:00 ~ 오후 07:00)

토요일, 공휴일에는 [온라인 상담신고하기](#)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 ◆ 어떻게 신고해요?(방문/우편)

□ ‘스포츠윤리센터’로 방문/우편 신고 가능합니다.



주소

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  
9층 스포츠윤리센터(우편번호 03737)

전화

전화: 1670-2876 / 02-6220-1376  
팩스: 02-6220-1377

## 3 방문 및 우편 상담 · 신고

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, 9층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  
(우:03737)

방문: 평일 오전 09:30 ~ 오후 05:30

(점심시간 오전 12:00~오후 01:00 / 저녁시간 오후 06:00~오후 07:00)

스포츠윤리센터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상담사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.

## ◆ 신고인을 보호합니다

- ‘스포츠윤리센터’에서는 신고인을 보호합니다.

### 3. 신고인 등 보호

- 신고인·피해자·관계인,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.
- 신고인 등은 인권침해 또는 비리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·신체에 위협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 ◆ 가명 사용 및 제3자 신고



## 가명 사용 신고 및 제3자 신고 안내

스포츠윤리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

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제①항에 따라

“

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 
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 
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”

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도 가능하며,  
이 때 연락 가능한 연락처(전화번호 또는 이메일)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 
가명신고의 경우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 
이메일([with@k-sec.or.kr](mailto:with@k-sec.or.kr))로 보내주십시오.

한편, 정식 사건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한  
정확한 조사와 사건 처리결과 안내를 위하여  
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신고양식 다운받기 ↓

- **가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**
- \* 단, 가명신고 시, 정식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
- **제3자가 신고 할 수 있습니다.**
- **이메일로 접수합니다.**

[with@k-sec.or.kr](mailto:with@k-sec.or.kr)